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2003. 12. 31 폐지됨에 따라 서구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안 제3조제3항)
 - 위촉직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여성위원 :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노력(안 제3조제6항)
- 회의소집일 통보 : 각 위원에게 5일전까지 통보(안 제5조제3항)
-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원칙(안 제5조제5항)
- 위촉의 해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위촉된 업무를 대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에 따라 서구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번에 개정·신설된 조항들은 임원선출방식과 위원구성(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소집 안건의 서면통지, 회의록 작성,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위원 위촉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의·의결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제4항).